

# 하도급계약에 관한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⑦

자료제공 / 공정거래위원회

## 1. 하도급법상 부당반품금지

**Q** 어떤 경우가 하도급법상 금지하고 있는 “부당 반품”에 해당하는지?

**A** “부당반품”이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 또는 인수한 때에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품하는 행위를 말하는 바 하도급법상 부당반품에 해당하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.

-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을 이유로 목적물을 반품하는 행위
- 검사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목적물을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
- 원사업자가 공급한 원자재의 품질불량으로 인해 목적물이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
- 원사업자의 원자재공급 납기지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목적물을 반품하는 경우

## 2. 공사비 일부를 대물변제 받기로 한 경우의 법 위반 여부

**Q** 1) 갑(매출액 1조원)이 발주하는 공사를 을(화의 업체로서 화의전 매출액 6천억원)이 수급하되 전체 공사비의 40%를 대물로 결재 받는 조건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되는지?

2) 을이 갑으로부터 수급받은 공사를 40% 정도 대물로 변제받기로 하고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하도급거래에 해당되는지?(단, 하도급업체의 동의를 충분히 있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경우임)

**A** 질의내용에 의하면 “갑”과 “을”은 발주자와 원사업자의 관계 이므로 “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(이하 “하도급법”)을 적용할 수 없으며,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할 경우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는 것은 하도급법에 위반되지 않으나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는 데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사업자에게 있다. ◉